

# 기아

---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2024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기아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준수를 위한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3.11.27>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공정거래 자율준수와 관련한 회사의 모든 업무와 임직원들의 모든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단, 관련 법규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렇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27>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는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에 적용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기준 등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따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1.27>
2. "공정거래 관련 법규"는 공정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제반법규를 말한다. <개정 2023.11.27>
3. "경쟁당국"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국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1.27>
4.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자율준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소와 실행방안을 제시한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3.11.27>
5. "대표이사"는 회사의 최고 의사 결정권을 가진 자이며, 최고경영자(CEO)로 칭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3.11.27>
6.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7. "자율준수 전담조직"은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실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말한다. <신설 2023.11.27>
8. "임직원"은 고용 형태나 종류와 무관하게 회사와 고용 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신설 2023.11.27>

9. "자율준수가이드"는 자율준수 관리자의 책임 하에 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자율준수 프로그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고, 자율준수 프로그램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 및 제작되는 문서이며, 이른바 "자율준수편람"을 의미한다. <신설 2023.11.27>
10.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기준"은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회사의 규정, 지침, 가이드라인, 자율준수가이드를 통칭한다. <신설 2023.11.27>
11. "자율준수협의회"란 회사가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추진 및 운영을 담당하는 자문 및 협의(심의) 조직을 말한다. <신설 2023.11.27>
12. "내부신고 시스템"이란 회사가 내부신고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운영하는 일체의 모든 방법 및 절차를 말하며 온라인·오프라인을 불문한다. <신설 2023. 11. 27>
13. "제재조치"란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임직원들에게 자율준수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3.11.27>
14. "인센티브"란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행위 및 자율준수 프로그램 모범적 실천행위에 대해 인사상 혜택이나 포상을 부여하여 임직원들에게 자율준수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3.11.27>
15. "사전업무협의"란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수행 업무에 대해 자율준수관리자 및 자율준수 전담조직 등의 검토를 받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11.27>
16. "리스크"란 회사의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3.11.27>
17. "효과성"이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그 목적에 따라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을 방지하고 업무수행의 비합리적인 요소를 제거하며 준법·윤리경영을 실천하는데 기여함을 말한다. <신설 2023.11.27>

## 제2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 제1절 대표이사

#### 제4조(대표이사의 역할) <신설 2023.11.27>

- ① 대표이사는 자율준수가 기업 운영의 중요한 가치임을 보장한다.
- ② 대표이사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충분하고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한다.

- ③ 대표이사는 효과적인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과 조직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 **제5조(대표이사의 권한) <신설 2023.11.27>**

- ① 대표이사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다.
- ② 대표이사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예산과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
- ③ 대표이사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하여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 **제2절 자율준수관리자**

#### **제6조(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

- ①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27>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자로 한다. <신설 2023.11.27>
  - 1. 자율준수 관련 업무를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직위 및 직책을 가지는 자
  - 2.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대한 지식 혹은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포함한 준법경영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선임 및 해임된다.
- ④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사실과 역할을 이메일, 업무시스템 또는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모든 임직원에게 명확히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7>
- ⑤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사실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한다. <신설 2023.11.27>
- ⑥ 자율준수관리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11.27>
- ⑦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자율준수관리자가 지정한 자가 다음 자율준수관리자 선임까지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11.27>

#### **제7조(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과 의무)**

- ①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 조사권
  - 2.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기준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시정요구권
  -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요구권

4. 임직원의 위법, 부당행위에 관한 대표이사, 이사회 및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대한 보고, 시정요구권 <신설 2023.11.27>
  5. 기타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개정 2023.11.27>
- ② 자율준수관리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에 따른 직무수행
  2.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개정 2023.11.27>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영업, 구매 등 자율준수 관련 업무와 이해관계가 상충될 위험이 높은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신설 2023.11.27>

### 제8조(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율준수와 관련된 계획 수립
  2.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3.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계획, 현황 및 실적을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보고(반기 1회 이상) <개정 2023.11.27>
  4. 자율준수 관련 위험성 평가 실시 <신설 2023.11.27>
  5.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효과성 평가)을 실시하여 이사회(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보고 <개정 2023.11.27>
  6. 제5호의 자율준수 실태 점검결과에 대한 시정요구,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 <개정 2023.11.27>
  7.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개정 2023. 11. 27>
  8. 자율준수에 대한 임직원 교육 <개정 2023.11.27>
  9.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기준 검토 <신설 2023.11.27>
  10.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기준 제·개정, 배포 <신설 2023.11.27>
  11. 자율준수협의회 소집 및 운영 <신설 2023.11.27>
  12. 자율준수 활동결과에 대한 기록유지 <신설 2023.11.27>
  13. 경쟁당국 등과의 협조 및 지원 <신설 2023.11.27>
  14. 경쟁당국 등의 조사 대응 협력 <신설 2023.11.27>
  15. 기타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본 규정에 의한 직무의 일부를 유관부서 등 임직원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3.11.27>

### **제9조(자율준수관리자의 독립성 보장) <신설 2023.11.27>**

- ①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자율준수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관련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직접, 적시에 보고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기준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자율준수 관련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아니된다.

## **제3절 자율준수협의회**

### **제10조(설치 및 구성)**

- ① 회사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추진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 및 협의 기구로서 자율준수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한다.
- ② 자율준수협의회 의장은 자율준수관리자로 한다.
- ③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련 업무 관련성, 직위, 역할 등을 고려하여 자율준수관리자가 지정한 자로 구성한다. <신설 2023.11.27>
-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전항에 따른 위원 이외에도 자율준수협의회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회사 조직도 상의 구조 및 취급 업무와 관련된 법적 위험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부서 내지 부문별로 “자율준수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1.27>
- ⑤ 자율준수관리자는 전문적인 안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준수협의회 산하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의 특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11.27>

### **제11조(운영)**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자율준수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반기 1회). <신설 2023.11.27>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자율준수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3.11.27>
- ③ 그 밖에 자율준수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정할 수 있다.

**제12조(역할)** 자율준수협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의 기본방침 설정
2. 공정거래 관련 법규 동향 공유 및 전파
3. 자율준수 관련 중요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 및 권고·자문 <개정 2023.11.27>
4.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제재 등과 관련되는 중요사항 심의 및 필요 사항 권고, 자문 <개정 2023.11.27>
5. 자율준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서 내지 부문 간 이해관계 조정 <신설 2023. 11. 27>
6. 법 위반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실시 및 감독 <신설 2023.11.27>
7. 기타 자율준수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절 전담조직 및 임직원

### 제13조(자율준수 전담조직)

- ① 자율준수 전담조직은 법무실 준법지원팀으로 한다. <개정 2023.11.27>
- ② 자율준수 전담조직은 제8조에 따른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좌한다. <신설 2023.11.27>
- ③ 자율준수 전담조직은 본 조 제2항에 따른 업무 추진 현황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분기 1회). <신설 2023.11.27>
-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본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내용 중 회사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에 중대한 변화나 영향을 끼칠 사안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23.11.27>
- ⑤ 자율준수 전담조직은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직원에게 대하여 각 현업부서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와 관련된 진술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자율준수 전담조직의 요청을 받은 임직원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신설 2023.11.27>

### 제14조(임직원)

- ① 모든 임직원은 자유경쟁과 공정함의 가치를 중시하고 공정거래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23.11.27>
- ② 모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기준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27>
- ③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26조에 따른 사전업무협의를 요청한다. <신설 2023.11.27>

- ④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본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7>
- ⑤ 모든 임직원은 자율준수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27>
- ⑥ 모든 임직원은 자율준수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27>
- ⑦ 모든 임직원은 자율준수와 관련된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따라야 한다.

## 제5절 인력 및 예산

### 제15조(회사의 지원)

- ① 회사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자율준수 관련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컨설팅, 전문 강사 초빙, 교보재 제작/인쇄/디자인 등)에 대해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27>

## 제3장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

### 제1절 자율준수 의지의 천명

#### 제16조(자율준수 의지 천명) <신설 2023.11.27>

- ① 대표이사는 회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조성 및 임직원들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실천을 위하여 자율준수 실천의지를 지속적으로 천명하여야 한다.
- ② 대표이사의 자율준수 실천의지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되어 이메일 및 사내 오토웨이 등을 통해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 ③ 대표이사는 자율준수 실천의지를 대외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외부의 이해관계자, 사외 일반인에게도 공지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자율준수 실천의지가 회사의 사업목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자율준수 문화 촉진 관련 활동(캠페인, 선포식, 표창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제2절 자율준수가이드

### 제17조(자율준수가이드 제·개정)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가이드를 제정하고 계약, 발주 등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빈번하게 수행하는 부서(이하 '고위험부서')의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문제를 자율준수가이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7>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개정 및 변경 소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분기 1회)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자율준수가이드에 반영·개정하고 그 내용을 대내·외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7>

### 제18조(자율준수가이드 배포) <신설 2023.11.27>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조직과 업무 특성을 반영한 자율준수가이드를 임직원들에게 배포·공유함으로써 임직원들이 상시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위 제1항에 따른 배포 시 고위험부서를 최우선으로 배포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자율준수가이드에 소개하여 모든 임직원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절 교육프로그램

### 제19조(교육의 실시)

- ① 회사는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 적절한 교육 과정을 수립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7>
- ② 회사는 고위험부서의 임직원을 최우선으로 하여 집중적으로 교육하도록 하며, 필요시 직위별 및 분야별로 교육대상 및 내용 등을 차별화하여 실시한다. <신설 2023.11.27>

### 제20조(교육의 절차) <신설 2023.11.27>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전담조직 또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법적 위험이 발생 가능한 현업부서의 임직원에게 대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 ② 자율준수 전담조직 또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지정한 자는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본부별 교육 담당부서 또는 자율준수담당자로 하여금 관련 분야 및

사업의 연간 교육 계획안 수립, 교육 콘텐츠 마련, 교육 현황 및 결과 공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 계획에 따라 외부강사를 선정 후 평가하는 등 절차를 거칠 수 있다. 교육 실시 후에는 교육 대상자의 이해도, 만족도, V.O.C, 참석율 등을 통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한다.

## 제4절 내부신고 시스템

### 제21조(내부신고 시스템의 운영)

- ① 회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부신고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한다. <개정 2023.11.27>
- ② 회사는 내부신고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용이하도록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익명성이 보장되는 신고 창구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신설 2023.11.27>
- ③ 회사는 신고를 접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신고를 한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로 인하여 보복, 차별, 징계 등 경제상, 신분상의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
- ④ 회사는 내부신고 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경험 등 역량과 중립성을 갖춘 부서 내지 담당자를 정하여 조사팀(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포함)을 구성하되, 조사팀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신고를 한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
- ⑤ 내부신고 시스템 운영 현황은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조사팀을 통해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지속가능경영위원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정기적으로 보고되어야 한다(연 2회 이상). <개정 2024.12.2>
- ⑥ 내부신고를 한 임직원이 본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신설 2023.11.27>
- ⑦ 자율준수관리자는 내부신고가 회사 또는 임직원에게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의 예방 또는 감소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에 대하여 해당 내부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3.11.27>
- ⑧ 자율준수관리자는 내부신고 시스템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27>
- ⑨ 그 밖에 내부신고 시스템 운영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율준수 관리자가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1.27>

## 제5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 제22조(법 위반 시의 처리)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서 또는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를 발견하는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의 요구, 인사(징계) 담당부서 등에 대한 통보 및 징계 등 조치의 요구, 교육, 개선방안 마련, 대표이사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7>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점검 및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27>
- ③ 본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에게 대한 처리는 회사의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3.11.27>

### 제23조(임직원에게 대한 인센티브)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대표이사에게 대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회사 또는 임직원에게 발생시킬 수 있는 법적 위험의 예방, 감소 등에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임직원 내지 부서에 대한 포상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3.11.27>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자율준수협의회 구성원 내지 유관부서에게 전항의 포상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1.27>
- ③ 본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에게 대한 포상에 대한 절차 및 내용은 회사의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3.11.27>

## 제6절 위험성 평가 및 사전업무협의 <신설 2023.11.27>

### 제24조(위험성 평가의 실시)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부서별 업무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리스크를 평가하고, 적합한 통제를 통해 법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② 위험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리스크 등급은 상, 중, 하 3단계로 구분한다.
- ③ 거래과정에 따라 평가항목을 구분하고, 협력업체, 임직원 등 행위자별 평가를 구분한다.

### 제25조(위험성 평가의 관리)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관한 위반 리스크를 식별, 분석, 평가하여 리스크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본 절의 위험성 평가에 따른 리스크 등급이 중 등급 이상의 경우 적절한

통제방안을 강구하여 해당 리스크를 회피, 경감 또는 제거하도록 노력한다.

- ③ 고위험부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서를 대상으로 하여 특별 교육을 실시하거나 추가적으로 별도 점검을 실시한다.

### **제26조(사전업무협의를)**

- ① 임직원은 제3자와 거래 또는 계약 체결 기타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자율준수관리자 및 자율준수 전담조직에게 그 수행 업무에 대한 사전업무협의를 요청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사전업무협의제도를 운영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이 업무 수행 중 사전업무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법 위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절 효과성 평가**

### **제27조(효과성 평가의 실시)**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7>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에게 효과성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27>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본조에 따른 효과성 평가가 독립적인 절차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23.11.27>

### **제28조(효과성 평가의 관리) <신설 2023.11.27>**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효과성 평가 결과에 대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특히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거나 그 밖에 집중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부서에 대해 필요한 경우 특별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에게 본 조 제1항의 개선 조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효과성 평가 결과 및 평가 결과에 기초한 개선조치 이행사항을 이사회(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절 문서관리규정

### 제29조(문서관리)

- ① 자율준수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아래 분류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27>
- ② 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문서관리는 회사의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1.27>

## 제4장 기타

### 제30조(공시)

- ① 회사는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반기 1회). <개정 2023.11.27>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임직원에게 사내 업무게시판, 뉴스레터(소식지), 사내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3.11.27>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임직원에게 올바르게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27>

**제31조(별도 운영지침)** 자율준수관리자는 본 규정의 효과적인 시행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준 또는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27>

### 제32조(제정 및 개정) <신설 2023.11.27>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거쳐 본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따른 단순 자구수정 등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은 본 규정의 개정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율준수관리자는 본 규정의 개정 후 상당한 기간 내에 대표이사에게 개정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본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준수 협의회 위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부 칙(2002. 11. 19)**

제1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02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 2)**

제1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4. 7)**

제1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1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4. 11)**

제1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11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 17)**

제1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12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 14)**

제1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13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1. 27)**

제1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23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2. 2)**

제1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24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